

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전부개정 2010년 11월 15일 조례 제1116호

일부개정 2011년 2월 21일 조례 제114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의 전반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중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수렴단(이하 “수렴단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수렴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
2. 재정비촉진사업 발전 방안 및 개선의견 제안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

제3조(구성) ① 수렴단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며 시장이 위촉한다.

② 수렴단은 5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자격) 위원은 사업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권자와 오산시 거주 주민으로서 만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5조(사업구역별 운영 및 직무) ① 수렴단의 구역별 수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(안)의 구역별로 임원(단장, 총무)을 둘 수 있다.

② 단장 및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단장은 사업구역을 대표하고 사업구역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④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구역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구역별로 임원을 둔 수렴단은 회의록 및 회의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오산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의견수렴단 설치 및 운영 조례

④ 회의록에는 회의일시, 장소, 출석위원, 회의안건,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 등) ① 위원은 임기는 오산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

제8조(경비지원) 시장은 수렴단의 활동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조사, 세미나,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엄수의 의무) 위원은 직무상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렴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오산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고시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자문위원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자문단 위원은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1. 2. 21>

부칙 <2011. 2. 21 조례 제114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